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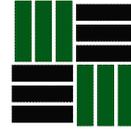
대양스트랩 주식회사

Add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개경포로 2100

Tel : 054-955-8990~1

Fax : 054-955-8994

E-Mail : info@dystrap.co.kr



DY STRAP

TOTAL PACKAGING SOLUTION

인 권 · 노 동 방 침

DATE : 2023년 12월 29일

REV No. : 1차 제정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지속가능한 행복 실현을 위해 모든 사업장 및 협력사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본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유지 및 유지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 준수에 지속해 노력하며, 필요한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 협약, 유엔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등 국제기구의 인권 보호 및 노동기준을 준수하며, 이를 기반으로 본 방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본 방침과 사업장이 위치한 현지 법규를 기반으로 모든 사업 운영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양스트랩(주)
TOTAL PACKAGING SOLUTION

범 위

본 방침은 당사 구성원을 포함하여 협력사 파트너사 합작사 (Joint venture) 등 모든 거래관계에 있는 파트너가 함께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입니다. 협력사의 경우 본 방침을 기반으로 협력사 행동규범과 가이드라인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운 영 체 계

1. 인권 경영 거버넌스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 경영위원회에서 인권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담당하고, 인권 경영 현황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인권 경영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를 구성하여 인권 경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인권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성원과 협력사, 파트너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본 방침을 정기적으로 전달하여 이해관계자와 인권 경영의 의지를 공유합니다. 또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인권 경영에 대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당사의 인권 경영 향상에 참고합니다.

2.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권 영향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인권 리스크는 전 사업장과 합작회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확인하며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확장하거나 신규 파트너사가 추가될 때도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인권 리스크 완화

인권 영향평가를 통해 식별된 인권 리스크는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완



화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도출합니다.

4. 고충 처리 프로세스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권 이슈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윤리경영 관련 상담 제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가 제보될 경우, 내용 확인과 조사 절차를 거쳐 구제책을 논의합니다. 모든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정보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 등의 보복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보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라 CEO에게 보고됩니다.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으며,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세부 운영 지침

1. 인권 존중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강제노동 금지

입사 및 고용유지를 위한 수수료, 비용, 채무노동,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등 근로자의 개인 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실 및 식수 등 휴게시설, 외부 의료시설, 공장, 기숙사 등의 출입 및 이용 등 이동에 제약이 없다. 이는 대양스트랩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인력공급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BP사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3. 아동노동 금지

15세 미만(또는 현지 국가 법률에서 정한 아동 나이 기준이 엄격한 경우, 현지 국가 법률 적용)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이는 대양스트랩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BP사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당사의 국내외 사업장과 BP사는 신규 입사자의 나이 검사 등 엄격한 입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용인될 수 없다. 15세 미만의 아동 근로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로 돌아가거나, 의무교육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연소자 근로

18세 미만 연소자(학생, 인턴, 실습 및 수습생 포함)의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입 사원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5. 근로 시간

근로 시간에 대한 ILO 협약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 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 휴식 시간과 휴일은 본 방침과 국제 표준,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여 정한다. 초과 근무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며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구성원들에게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대양스트랩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BP사는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임금

구성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생활을 위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정한다.

7. 차별 금지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차별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임신 및 결혼 상태, 정치적 신념, 성 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하지 아니하며, 채

용, 승진, 임금 및 보상, 복리후생, 업무 진행, 퇴직 및 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차별을 근절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8.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누구나 피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피해 사례 발생 시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징계 및 구제 조치를 진행한다.

9. 결사의 자유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차별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책임 있는 광물의 조달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종류의 인권 침해나 환경오염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3TG, 코발트 등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인접국을 비롯한 위험지역 및 분쟁 영향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에 관한 확인을 위해 광물의 원산지 및 협력사에 대해 실사를 시행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해당 실사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공개한다.

11. 정보 보호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직 금지약정서', '정보보호서약서' 등 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취약계층 보호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유엔 세계인권선언(UDHR)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특히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바탕으로 아동과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치와 의무를 다한다.

13. 인권 옹호자 존중

대양스트랩 주식회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개인, 단체 및 사회기관(이하 인권 옹호자)을 존중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 옹호자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인권 옹호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위협, 협박, 보복,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공격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인권 옹호자와 협력하여 안전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참고 자료

본 인권 노동방침은 다음의 선언과 기준, 이니셔티브를 준수합니다.

- 유엔 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국제 권리 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ILO 핵심 협약(ILO Fundamental Conventions)
-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원칙
- 다국적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UN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